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백영기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박우민(6581) / 과장 김철욱(6575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2605호

시행일자 2025. 6. 1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건 전수 사전심사 실시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728(2025. 5. 28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적용 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온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실시 내용: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전수 사전 심사 후 등록

－ (대상)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신청건 전체

※ 조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: (기존) ‘⑤기타’ 인 대상자 → (확대) ‘①~⑤’ 전체

* 환자 상태가 아래 5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필수검사(조직세포학적 검사 등)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기준 예외적용

①ECOG 3이상, ②출혈위험성, ③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, ④감염위험성, ⑤기타

－ (절차) 등록기준 적합성(아래 3가지 조건)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

※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승인

① 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

②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(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) 기재

③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(확진 의견 포함) 기재

－ (처리부서)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본부 담당자

－ (제출서류) 건강보험(암) 산정특례등록신청서, 등록기준 예외적용 필수검사 결과지

- (신청방법)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또는 서면 신청(※ KT EDI 접수 불가)
 - (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) 산정특례 등록 시 검사결과지 첨부
 - (서면 신청) 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검사결과지 함께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

서울강원본부	F.02-3275-8114	광주전라제주본부	F.062-260-9009
부산울산경남본부	F.051-801-4208	대전세종충청본부	F.044-589-2309
대구경북본부	F.053-620-8010	인천경기본부	F.031-229-0407

나. 시행예정일: 2025. 7. 1.(화)

다. 기타: 동 내용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 예정

붙임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 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
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